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h colspan="8">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th></tr>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한국교통안전공단</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주)한국전산감리원</td><td>평가기간</td><td>2024.07.09
~
2024.08.19</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2024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td><td>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 colspan="2">2024. 04. ~
2023.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렌터카 대여에 따른 교통사고 지속 증가
○ 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으로 렌터카 교통사고 지속 증가
○ 23년 여객법 개정 및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라 렌터카 운전자격확인 체계화
○ 공유 모빌리티 산업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td></tr>
<tr><td rowspan="3">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td><td>추진예산</td><td colspan="2">592,460 천원</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한국교통안전공단</td><td colspan="3"></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 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td><td>추진유형</td><td colspan="2">□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6">- 모바일운전자격확인(블록체인) 신기술 대상이나 사업범위 협의 중으로 설계 산출물이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운전자격확인시스템(WEB/MOBILE) 기능 개발(고도화)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인프라(S/W) 도입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영</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 모바일운전면허(블록체인) 체계 변경 외 1차사업과 동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사용자
(내부, 1차와 동일)</td><td>2,413 건</td><td>[필수헝목]
사용자아이디, 성명,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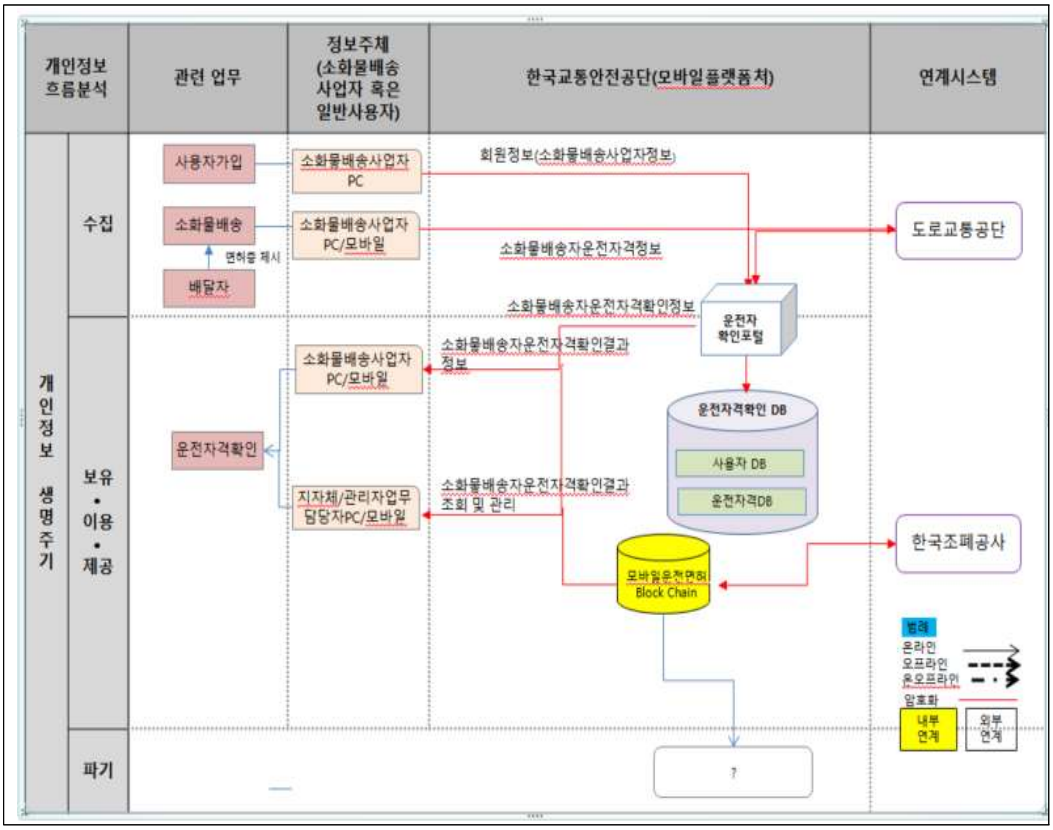
[선택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조전화번호, 소속, 부서,
계정상태, 첨부파일</td><td>-</td><td>사용자 본인 인증 및 권한관리</td></tr>
<tr><td>운전 자격 확인이력 (1차와 동일)</td><td>2,312,483 건</td><td>[필수항목]
운전면허번호

[선택항목]
면허성명, 면허종별, 생년월일,
성별, 대여시작일시, 대여종료일시,
검증결과</td><td>-</td><td>운전 자격확인 이력 관리</td></tr>
<tr><td>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colspan="4">1. 개인정보 생명주기 요약
• 수집: 사용자(소화물배달사업자/영업소/공단담당자/공단관리자/국토부담당자/지자체담당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초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개인정보를 등록함. 회원가입 후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 포털에 최초 로그인 시 사용자 분류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자가 최종 승인함. 소화물배달사업자는 포털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근거하여 소화물배달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혹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 및 신청정보를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에 등록하여 소화물배달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검증하며 소화물배송사업자의 회원가입 프로세스 외에는 1차사업과 동일함.
• 보유 및 이용: 수집한 사용자정보 및 운전자격확인 이력 등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나 금번 사업에서는 운전자격여부를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고 운전면허정보는 6자리만 저장하여 저장하는 개인정보는 없음
• 중요 개인정보(비밀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저장은 1차사업과 변동 없으며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 정보 송수신 시 안전한 암호화 통신 방식(SSL)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번 사업에서는 운전면허번호를 6자리만 저장하여 신규 추가되는 개인정보는 없음,
• 모바일 운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소화물배달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 및 신청정보를『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근거하여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모바일운전면허자료(블록체인)를 받아 구축하여 모바일운전면허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나 협의 진행 중이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td><td>

-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별로 파기 정책을 수립하여(보유기간, 파기정책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력을 관리할 예정임.

2.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 4개 평가분야 16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블록체인기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평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블록체인 설치에 대한 범위 미 확정으로 블록체인에 대한설계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 2023년 9월 15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령』및 2023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함.</td></tr>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1.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등이 유출・변조・훼손될 우려가 있음.(4.2.6)</td></tr>
<tr><td>위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td><td>1.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진행할 예</td></tr>
</table>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개선조치 방안	정임.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해당없음
평가결과		1. 대상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9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100%) 하고 있음. 2. 대상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 6개 평가항목 모두 적절하게 이행(100%) 하고 있음.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서 해당 없음 15개 항목 제외하고 10개 항목 모두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접근 통제 분야(4.2.6)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 5.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 CCTV, RFID, 바이오정보, 위치정보 분야는 대상시스템과 연관성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블록체인기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평가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블록체인 설치에 대한 범위 미 확정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설계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